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39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하고,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청을 비롯하여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

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 의지와 안보 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 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 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